

2026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

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,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 및 「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」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, 더하여 아래 ①~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.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”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 부정행위 해당 유형 】

-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
-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
-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
-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
-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
-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
-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
-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
-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
- ⑪ 그 밖에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

<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> →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(시험 시간,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)

★ 시험 중 활용 여부 및 기능과 무관하게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됨.
△통신(블루투스 기능 포함)·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: 휴대폰, 스마트워치, 태블릿, 이어폰 등
△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있는 모든 물품: 전자사전,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, 텀블러 등
△기타 충전식 물품 일체: 전자담배, 보조 배터리 등

-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,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(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) 응시하는 모든 영역/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. (단, 손상,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.)
- 1교시, 3교시 시작 전 응시자 본인 여부 확인 시, 휴대한 시계를 수험표·신분증 등과 함께 시험실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고, 감독관이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함.

<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> →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

△신분증 △수험표 △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△흰색 수정테이프 △흑색연필 △지우개 △샤프심(흑색, 0.5mm) △시침·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·통신(블루투스 등)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모두 없는 시계 △마스크(감독관 사전 확인) 등

- 단,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[예: 보청기·혈당관리기기(예: 교육청이 사전에 확인한 연속혈당측정기, 전용단말기, 인슐린펌프 등), 돋보기, 귀마개, 방석(감독관 사전 점검) 등]